

## □ 기관 정관(규정)

### 한국정치·정보학회 정관

199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2월 28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정치·정보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는 학회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발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련된 학술 연구·발표
2. 학회지 및 서적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종류)**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 제6조(회원자격)

1. 정회원 :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에 해당하는 자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2. 준회원 : 대학원에서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공자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한다.
3. 특별회원 : 본 학회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만 될 수 있고, 총회에서 표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를 신고하였을 경우
2.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여 상임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전임회장)
3. 고문 약간명
4. 부회장 약간명
5. 총무이사 1~2명
6. 연구이사 2~3명
7. 섭외이사 2~3명
8. 홍보이사 2~3명
9. 상임이사 2~3명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의 이사 약간명
11. 일반이사 약간명
12.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명예회장단 및 현직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되고 현직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에 의해 선임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연령순에 의거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회장에 의해 선임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처리에 참여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종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단, 상임이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 **제13조(회의의 성립 및 위임)**

1.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5장 재 정**

**제14조(재정)**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1.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결에 의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6장 산하위원회**

#### **제16조(편집위원회)**

1. 학회발행 학술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전공,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을 위한 심사자 선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확정 등 학술지 발간 및 출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윤리위원회)**

1. 학회의 학술활동 등에 필요한 윤리규정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명예회원을 포함한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의결한다.
3. 회원의 윤리의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7장 부 칙**

**제18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나 상임이사회 의 3분의 2이상 또는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경과규정)**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 관련근거: 정관 제16조(편집위원회), 논문편집·심사규정

### ▲ 정관 제16조(편집위원회)

#### 제16조(편집위원회)

1. 학회발행 학술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전공,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을 위한 심사자 선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확정 등 학술지 발간 및 출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논문편집·심사규정

## 정치·정보연구 논문편집·심사규정

2015년 9월 1일 개정

### I.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9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학회봉사 의욕 및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의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의 중재, 최종 게재여부의 판정, 게재 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심사 규정

### II.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 및 기준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두고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기준
  - (1) 심사위원회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 의 구조, 문헌과 자료 인용의 적절성, 원고작성 요령의 충실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 (2) 심사는 “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의 기준에 따라 3인 단심제로 한다.
  - (3)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게재	수정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4)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①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수정사항제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투고자의 수정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서에 대한 수정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이유 없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15만원(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 미납자는 심사불가하다.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 6)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논문을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 투고 규정

### 정치·정보연구 논문투고규정

2016년 9월 1일 개정

#### I. 논문 제출

1. 논문은 투고마감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kopolscom.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3.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고, 정치정보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 II.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학회 정회원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아래의 사람들은 정회원과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준회원으로서 대학원 이상(박사수료)의 학력을 소지한 내·외국인
  - (2) 비회원으로서 편집위원회에 의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

#### III. 논문 게재 횟수

1. 정회원은 각 호당 1편의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연속된 호에는 단독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각 호에 단독 논문 또는 공동 논문 중 1개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3. 동일 저자가 포함된 공동 논문은 1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게재할 수 있다.

#### IV. 논문 작성 요령

1. 논문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정한 일정액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논문은 표지, 국문요약, 영문요약,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한다.
  - 1)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필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연락주소, 전화, 팩스,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2) 국문요약은 각기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영문요약은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 4) 국문과 영문 요약에는 각기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기입해야 한다.
  - 5) 본문 목차의 기호체계는 I, 1, 1), (1)의 순서를 따른다.
  - 6)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짧게 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7) 인용이나 참조 등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의 해당위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예: (강준만 1998), (Easton 1979), (신기현 1996, 35), (이창기 외 1999, 35~36), (Cumings 1981, 72; 박찬욱 2003, 35), (동아일보 2004/04/15, 5)
  - 8)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아래의 <참고문헌작성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9) 표나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삽입한다.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쓴다.
3. 심사 시에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을 피한다.
4.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부기한다.
5. 외국인명은 현지 발음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원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알몬드(G. A. Almond)
6.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7.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8. 외국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하고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번역명과 괄호 속에 원어의 약어와 원어명을 함께 쓴다. 다시 나올 경우는 약어만 쓴다.

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WHO의 활동은.....

9.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쓴다.

10.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치정보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 <참고문헌 작성 예>

1. 참고문헌은 본문의 내용에 소개된 것에 한하여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2. 각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여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참고문헌은 아래에 표기된 예에 따라 작성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김재영. 1997. 『현대정치학』. 서울: 삼우사.

이창현. 1996. “남북대화의 전개와 환경요인: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신명순. 1996. “한국국회의 입법활동: 비교적 분석.” 한홍수 편. 『한국정치동태론』. 서울: 오름.

신호창. 1999. “정부의 홍보정책에 대한 고찰 및 발전적 국정홍보 모델의 제시.” <http://www.commbooks.com/journal/publicity99.html>(검색일: 2004. 4. 20).

Castells, M.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8. No. 1(Winter).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발행 규정

### V. 학회보 발간 시기

본 학회의 학회보인 『정치·정보연구』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3회 발간하며, 원고 마감일은 각각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로 정한다.

## □ 연구윤리 관련 규정



- **관련근거: 정관 제17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규정**

**▲ 정관 제17조(윤리위원회)**

**제17조(윤리위원회)**

1. 학회의 학술활동 등에 필요한 윤리규정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명예회원을 포함한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의결한다.
3. 회원의 윤리의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연구윤리규정**

**한국정치·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11월 15일 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정치·정보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단체 및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및 발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합리적인 연구 윤리의 준거 또는 기준을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본 학회와 관련한 일체의 연구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의 틀 내에서 건전한 연구 성과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일체의 논문들
2.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3. 본 학회와 직접 관련하여 발행되는 모든 형식의 연구성과물
4.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임기)** 본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그리고 사무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전체 위원 6인(위원장 포함) 가운데, 회장의 제청으로 학회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일반 임원의 해당 임기의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학회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
4. 사무간사는 학회의 사무국장이 자동 겸직한다.
5. 위원장, 위원 및 사무간사 중 사정으로 인하여 유고시에는 위 2항의 선출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기 및 특별 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의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별회의의 소집 요건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작성 및 개정
2. 연구윤리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실심사 및 판단

**제7조(연구윤리의 위반 행위)**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1.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문의 중복적 사용
2. 허위 또는 사실 왜곡 및 조작에 의한 연구물
3. 일정 수준 이상의 표절 행위
4. 심각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5. 부적절한 연구자(저자, 공동저자) 표시 행위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위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및 방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1.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정한다.
2. 위원회에서 위반행위로 결정된 연구성과물은 게재 취소 등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3. 위반행위의 책임연구자 및 모든 공동연구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위 1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4. 위반행위의 연구자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모든 이행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규정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사회적 상규에 따르며, 이에 관한 일체의 판단과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정을 위한 회의는 회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2조(규정 발효 및 시행)**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고 시행한다.

## 기타 규정

### Ⅲ. 기타 규정

- 1)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이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3)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정치정보학회 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4)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반드시 규정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없음”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의 특성상 상기 규정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 규정에 부합되는 기관 자체의 규정, 규칙 등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